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1월 28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2월11일)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7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기반조성과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열린교육 사회를 통한 평생 학습공동체를 만들고자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생학습협의회를 둠(안 제3조)
- 협의회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4조)
-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함(안 제5조)

-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 교육 진흥, 시민과 평생학습 관련 단체의 연계망 구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안 제10조)
- 평생학습센터는 필요시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위원회를 둠(안 제14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평생학습 기관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안 제15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설립목적은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을 진흥코자 함
○ 협의회의 기능은	○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결정을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시의 자문 기관 역할을 함
○ 설치규모는	○ 20평 정도임
○ 센터의 역할은	○ 평생학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진흥 등 전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코자 함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조례자체가 평생교육법에서 제정하는 원래의 입법 취지대로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와 특히, 우리시에 있는 200여 평생학습기관과의 연계성을 총괄 검토후 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65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18일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사항 협의 및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개최토록 하고,
- 조직원 구성시 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추상적으로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 삭제하며,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을 분리하여 소장의 지위 향상 및 역할을 강화코자 함

2. 주요골자

- 정기회의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연2회 개최토록 수정(안 제7조)
- 조직원 구성은 연구원을 제외한 소장 및 직원으로 수정(안 제12조)
- 소장의 자격기준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로 수정(안 제13조)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여론 조사시 대학교수등 지식 계층 보다 동의 새마을지도자등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회단체장들의 실질적 의견수렴 (박병화 의원) ○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 시사회 이전에 제작 콘티나, 스케치콘티, 스토리보드등을 작성 미리 검토 할 수 있도록 준비(박종국 의원) ○ 직원 워크샵 및 자체토론회 개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위원장) ○ 주요의정 핵심추진과제(17개사업)추진시 계획 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 될 수 있 도록 추진 철저(위원장, 최해영의원)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항중 "연1회"를 "연2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소장 및 연구원"을 "소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자격기준)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자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신·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회의) ①협의회 정기회의는 <u>연1회</u>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7조(회의) ① ----- <u>연2회</u> -----</p> <p>-----.</p> <p>② ~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조직원 구성 등) ①평생학습센터에는 <u>소장 및 연구원</u>, 직원을 포함 5명 이내를 둔다</p> <p>② (생략)</p>	<p>제12조(조직원 구성 등) ① -----</p> <p>--- <u>소장</u>, -----</p> <p>-----.</p>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자격기준) <u>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u></p>	<p>제13조(자격기준) <u>평생학습센터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u></p> <p>1.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이상 자격이 있는자</p> <p>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p>

부천시평생학습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이하 “시”라 한다) 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③ 시장은 시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 2 장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3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기타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교육장, 대학교 총(학)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사무소장, 평생교육관련 단체장 등 각계 각종의 인사 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제8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평생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소의 설치) 평생학습센터의 사무소는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번지에 둔다.

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3. 시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학습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강사 관리 전문 은행체 운영
5. 지역인적자원개발과 민주시민의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운영)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조직원 구성 등) ①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 및 연구원, 직원을 포함 5명이내을 둔다.
②소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자격기준) 소장 및 연구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직원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평생학습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1명, 교육업무담당 과장, 정보관리 업무담당 과장,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 도서관 업무담당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학습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 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16조(회의 등) ①운영위원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감독) ①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